

## 【 17 】 기초의원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

### 개정건의안

발의연월일 : 2005. 12. 15

발 의 자 : 원대식 의원 외 7인

#### □ 주 문

- 의원 수 13인 미만의 기초의회라 하더라도 집행부의 업무 및 조직 체계가 점점 다양하고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등 효율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신축성 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현행 「지방자치법」 제50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 중 「상임위원회」를 설치 할 수 있는 기준인 “대통령령으로 정한다.” 와 “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한다.” 를 삭제하여 개정할 것을 건의하며
-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대통령령 제18701호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의3 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) 제1항 [별표 5] 중 ‘의회사무국’ 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인 “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·자치구” 를 “집행기관에 국제(局制)가 있는 시·자치구” 로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.

#### □ 제안이유

- 상임위 설치에 있어 광역의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기초의회는 법령으로 규제함은 형평성 및 기초의회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단순히 의원정수를 설치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위원수 산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따라 구성되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상임위원회 운영이 불가능 하므로

- 현행 「지방자치법」 제50조제2항 중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인 ‘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. 이 경우 시·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’ 와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의2 중 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하되, 그 설치기준은 별표9와 같다.’ 를 삭제하여 기초의회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각 기초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실과 시대에 맞는 기초의회의 조직운영 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
- 현행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18701호) 제10조의3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) 제1항 [별표 5]의 규정에 의하면 “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·자치구”에 한하여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, 의원정수 13인 미만의 시의회 및 자치구의회는 집행기관에 국제(局制)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(課) 단위인 의회사무과를 설치하고 있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
- 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마땅히 적용되어야 하는 “견제와 균형”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직제로서, 집행기관에 국제(局制)가 있는 시·자치구에는 의회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
- 이상과 같은 제안이유를 살펴볼 때 의원정수 13인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에도 상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 기준 개정과  
집행기관에 국제(局制)가 있는 시·자치구에는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 기준 개정을 위의 주문과 같이 건의하는 바임.

#### □ 주요골자

- 의원정수 13인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 개정 건의
- 집행기관에 국제(局制)가 있는 시·자치구에는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개정 건의

**붙 임 :**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개정 건의문 1부